

에 있어서도 過密負擔金を 賦課하지 않은 建物과 衡平이 맞지 않는 점이 있으며, 이것은 무슨 얘기나 하면 販賣施設 1萬 5,000㎡부터 5,000㎡를 控除하고 1萬坪부터 賦課한다는 얘기인데 만약의 경우에 1萬 4,999.9㎡를 申請할 경우에는 過密負擔金이 免除된다는 그런 不均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 制度가 施行될 時 엄청난 負擔金を 피하기 위하여 小規模建築物만 짓게 된다면 서울시는 國際都市가 아닌 전형적 都市로 바뀔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셋째, 都心再開發建築物에는 현재에도 公共施設을 建築主가 施設하게 되어 있어 建築費의 25%에 해당하는 過重한 負擔으로 事業이 沈滯中에 있는데, 여기에 비록 30%를 控除한다고 하더라도 過密負擔金を 賦課하면 또 7% 이상이 加算하게 되어 결국 37%라는 엄청난 負擔을 안는 것입니다. 그래서 都心地 再開發事業은 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우리 議員님들, 鍾路, 乙支路, 淸溪川 그 兩 옆에 駐車場 하나 施設없는 옛날 古屋 이러한 施設이 만약에 이것이 通過된다면 그냥 뭉인다는 얘기입니다.

넷째, 總量規制에 의한 工場 등을 建設部가 매년 審議 規制하는 것은 地方化時代의 精神에 맞지 않는 것이며,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로도 規制가 가능한 事項으로 總量規制는 地方自治團體에 그 權限을 委任하여 自治團體의 條例로 運營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施行令改正案에 豫告된 負擔金 賦課規定과 總量規制는 서울시 發展을 阻害할 毒素條項으로 이 規定들은 반드시 是正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며 우리 委員會에서는 이에 대한 代案을 마련하여 修正案을 提案하게 된 것입니다.

修正案의 主要內容은 過密負擔金を 賦課할 時 첫째, 過密負擔金은 서울에만 局限해서 賦課하지 말고 過密抑制圈 全 地域에 賦課하라 하고,

둘째, 基礎控除 5,000㎡를 확대하여 販賣用 建築物은 1萬 5,000㎡ 이상으로 하고, 業務用 建築物은 2萬 5,000㎡이상으로 上向調整하라 하였습니다.

셋째, 都心再開發 建築物에 賦課되는 負擔金을 全額 減免하라 하고,

넷째, 總量規制는 市·道의 自治團體長이 하거나 都市型工場은 總量規制에서 除外하라 하였으며,

다섯째, 서울시가 投資하는 法人의 建築物은 負擔金 賦課對象에서 除外하라 하였습니다.

이상 決議한 內容을 配布하여 드린 修正決議文을 參照하여 주시고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이 施行令改正案에 대한 問題點을 깊이 인식하셔서 이 修正決議案이 우리 全 議員님들의 意志로써 決議되어 우리 意志가 政府에 그대로 反映될 수 있도록 議員 여러분께서는 滿場一致로 議決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白昌鉉 그러면 都市整備委員會에서 提案說明한 首都圈整備計劃法施行令改正案에 대한 修正決議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首都圈整備計劃法施行令改正案修正決議文

수도권정비계획은 각종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 서울이 태평양 시대의 중추도시로 성장토록 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그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금번 정부에서 추진중인 시행령개정안은 서울의 발전적 노력을 뿌리째 흔들어 놓

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이 확실하므로 우리 서울시의회는 1,100 만시민을 대표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1. 과밀부담금을 특정 1개 지자체(서울시)에만 부과하는 법령개정은 지방자치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이를 반대하며, 과밀부담금 부과지역을 과밀억제권 전역으로 확대하라.
1.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규모를 판매용 건축물은 15,000㎡ 이상, 업무용 건축물은 25,000㎡ 이상으로 하고 기초공제를 5,000㎡로 하는 것은 실질적인 규제의 폭을 확대 강화하는 것으로 이를 반대하며, 기초공제규모를 부과대상규모로 상향조정하라.
1. 과밀부담금 부과를 도심재개발사업에 적용할 경우 건축비의 25%나 되는 공공시설 개발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현실에 추가적 부담가중은 재개발사업을 위축시킬 것이며, 도심재개발사업 활성화 정책에 역행됨으로 재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을 전액 감면하라.
1. 총량규제는 기존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제외되었던 도시형공장까지 규제하여 서울형 Hi-Tech 산업발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므로 이를 반대하며, 경제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량의 결정은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도시형공장은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라.
1. 서울시가 투자하는 법인의 건축물은 서울시내에 있어야 하므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라.

31. 行政區域境界調整에 관한 議會意見聽取(서울特別市長 提出)

(17時 45分)

○議長 白昌鉉 다음은 議事日程 第30項 行政區域境界調整에 관한 議會意見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內務委員會 白中元議員님 나오셔서 審査結果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中元議員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 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은 道峰區 出身 內務委員會所屬 白中元議員입니다.

오늘 行政區域境界調整에 관한 意見聽取에 대한 審査報告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本 行政區域境界調整에 관한 意見聽取는 地方自治法 第4條에 根據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번에 提案된 것은 1991年 12月 30日 서울市 告示 391號로 新內 宅地開發事業이 施行되면서 宅地開發事業地區內的 河川流路가 변경됨에 따라 蘆原區 孔陵洞 一部 地域 3,358坪을 中浪區로 編入하고, 반면 같은 河川의 流路變更으로 中浪區 墨洞 一部 地域 2,040坪을 蘆原區로 編入하며, 1993年 9月 24日 月溪6地區 宅地開發事業 施行으로 蘆原區 月溪洞과 道峰區 倉洞에 걸쳐 아파트 단지를 造成하게 되어 道峰區 倉洞 一部 地域 1,650坪을 蘆原區에 編入하고자 하는 것으로, 當 委員會에서 審査해 본 바 境界調整 基準에 適合할 뿐 아니라 앞으로 宅地開發事業이 끝나 入住民이 入住時에 일어난 住民登錄, 登記 節次, 行政의 非能率性 등을 事前에 解消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주 바람직하고, 關係 基礎議會 議員, 蘆原·中浪·道峰區議會에서도 찬성하고 있어 별다른 問題가 없으므로 市 意見에 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配付하여 드린 審査報告書를 參考하여 주시고 內務委員會에서 審査한 대로 可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白昌鉉 그러면 行政區域境界調整에 관한 議會意見聽取의 件에 대하여 內務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內容과 같이 市議會 意見으로 採擇하고자 합니다.

議員님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